FSMA Part 9에 따른 MAS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TSP) 제도는 싱가포르 밖에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소재자로서, 지급서비스법(PSA),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 또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관장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그러한 자는 DTSP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해당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MAS는 라이선스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1] 따라서 체크리스트는 이 제도가 애초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구조조정이 더 나은 방안인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을 결정한 그룹은 PSA 라이선스와 같은 수준의 심사를 예상해야 하며, MAS는 추가로 왜 그 사업을 기존 라이선스로 영위할 수 없는지를 묻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체크리스트

-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사람(임직원, 이사, 계약자)이 수행하는 모든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파악하고, 그중 싱가포르 밖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싱가포르 법인 또는 개인이 PSA, SFA, 금융자문법(Financial Advisers Act)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면제되었거나, 규제를 받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Part 9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Part 9가 적용되는데 라이선스 없이 2025년 6월 30일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하였다면, 노출된 위험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 MAS에 자진하여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구조조정을 평가합니다. 규제 대상 활동을 라이선스를 보유한 스위스 법인 또는 다른 법인으로 이전하고, 싱가포르 법인은 규제 대상이 아닌 그룹 서비스로 한정하며,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 협상, 온보딩, 거래 실행 또는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화합니다.
-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해당 활동을 PSA 또는 SFA 라이선스로 수행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한 설명, 그리고 해외 고객 소재 관할의 본국 규제에 관한 분석을 준비합니다.
- 25만 싱가포르달러의 기본자본, 그리고 거주 이사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요건 충족을 입증합니다.
- FSMA DTSP 고시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맞춘 AML/CFT 체계를 준비합니다. 해외 고객에 대한 트래블룰 이행도 포함합니다.
- 기술 위험 및 사이버 위생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배구조 및 적격성 서류를 준비합니다.
- 연회비와 지속적 의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합니다. 지속적 의무는 주요 지급기관(MPI)의 의무와 같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ss. 136–141. MAS, Response to Feedback Received, 2025년 5월 30일, paras 2.1–2.6. 제K편 제V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